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7일, 고민정의원 등 2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2024.11.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2차 교육위원회(2024.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제1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전조정위원회(2024.11.27.)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3차 교육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고민정의원)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법에 따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를 개정함. 교육부는 동 규정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얻었다고 밝힘.

그러나 헌법상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비추볼 때, 「교과용도서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의 필요성 제기됨.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싸고 학생의 문해력 하락, 스마트 기
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막대한 예산 투입 등 여러 우려가 제
기되고 있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024년 7월, 초·중·고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9.6%로 나타났
음. 학부모의 82.1%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에 AI 디지털교과서가 갖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
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지
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

료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개정안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의 선정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학교의 환경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재정이나 인프라 여건에 따라 지역 및 학교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여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교육 격차나 학습 격차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법 체계적 측면에서 다소 일관성을 더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안 제29조의2에서 교육 자료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교과용 도서와는 구별하고 있는데, 안 제29조제1항에서 ‘교과용 도서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구분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음.

또한 안 제29조의2제2항에서는 교육 자료 중 AI 디지털교과서(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는 이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선정 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9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작물 및 교육감이 정한 자료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므로 개정안에 따라 학교현장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의 경과조치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 지위를 잃게 되어, 학교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신뢰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고민정 의원,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